

조례 ·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목 차

1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3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4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4
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
6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32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시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등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에 적용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심의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안 제9조)

- 마.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안 제10조)
-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안 제11조)
- 사.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안 제12조)
- 아.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필요
 -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연구활동비(안 제6조), 정책연구용역(안 제11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에 따라 운영중인 연구단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	• 목적 -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	
제2조	• 용어의 정의 - 연구단체: 의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성하여 거창군의회에 등록된 단체 - 연구활동비: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 - 정책연구용역 :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 - 정책개발비 :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	
제3조 ~ 제5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심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등 - <u>5명 이상의 의원</u>으로 구성, 의원은 <u>2개 이내</u>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 <u>연구단체 등록신청서</u>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u>운영위원회에서</u> 각종 사항 심의 - <u>연구활동계획서(변경신청서)</u>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제6조 ~ 제7조	• 연구활동비 등 지원, 집행 -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u>예산액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 연구활동비는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	
제8조 ~ 제10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촉직: <u>민간 전문가 중 3명 이내</u>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기준 마련	
제11조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	

제12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 연구활동 완료 후 결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제13조 ~ 제14조	•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 조례안 제4조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할 수 있으며,
- 정책연구용역은 일반 연구활동 대비 예산 규모가 크고,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에 부패 개입 여지가 많으므로 조례안 제8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패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어 연구활동의 책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음.
-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2024. 6.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①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등의 공정성을 위해 위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부산) 기장군 (경기) 부천시, 안양시, 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고령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 재량으로 되어 있는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하남시, 양주시 (전북) 완주군 (경북) 청송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하동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신설	(강원) 영월군
②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보완	
- 임의규정인 제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논산시, 계룡시, (전북)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영천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강원) 원주시, 양양군
- 위원에 대한 회피 규정 마련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충북) 제천시, 음성군 (충남) 계룡시, 청양군 (전북)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여수시, 광양시, 영암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영천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양양군
-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남양주시, 오산시, 가평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예산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전남) 목포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산시, 영양군, 성주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속초시, 영월군
③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설	(경기) 부천시, 평택시, 양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태백시, 영월군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재량적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시흥시, 양주시, 의왕시, 연천군 (충북)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전남) 목포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김천시,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속초시, 삼척시
-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전남) 여수시,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경북)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영양군, 성주군 (경남) 김해시 (강원) 태백시, 영월군
④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인천) 옹진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양양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홈 페이지 등 공개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등 일부 공개할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남) 구례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남) 통영시 (강원)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①, ②는 [표 2-1] 참고, ③~⑦은 [표 2-2] 참고)	
①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	
- 조례에 징계 규정 마련 * 지방자치법,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열거한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등 위 반행위가 징계대상임을 명시	(부산) 기장군 (충남) 금산군 (경북) 포항시, 영천시, 칠곡군 (경남) 거창군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행위 추가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충남)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남원시, 진안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경남)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남해군, 하동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양양군
②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또는 징계 기준 보완(윤리심사 대상유형별 징계기준 추가)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양양군
③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전남) 보성군, 영광군 (경남) 사천시
④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경기)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하남시, 오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임실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 청송군, 영양군 (경남) 김해시
⑤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동두천시, 연천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전남)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김천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하동군, 산청군 (강원) 태백시
⑥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미흡한 규정 보완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양양군
⑦ 군 소속 공무원 등의 예외적 참여를	(경북) 고령군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허용한 준용 규정 정비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표 3] 참고)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위원 구성·운영	
-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2/3이상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	(경기) 부천시 (충북) 옥천군
- 외부추천을 통한 민간위원 위촉규정 마련 또는 민간위원은 모두 외부추천을 받도록 규정 개선	(인천) 옹진군 (경기)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충북) 옥천군 (전남) 여수시, 강진군
- 심사위원인 의원이 출장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는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경북) 문경시, 의성군, 고령군 (강원) 속초시
② 심사위원 임기 명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경기) 성남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김천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밀양시 (강원) 속초시, 영월군, 양양군
③ 회의 운영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확대	(충남) 천안시
-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경기) 남양주시, 동두천시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경남) 김해시 (강원) 태백시
④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에 대한 의무적 환수 규정 신설	(전남) 구례군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표 4] 참고)	
①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근거 마련	(경기) 평택시 (충북) 옥천군, 진천군 (충남) 안산시, 서산시, 청양군 (전남) 보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영월군
② 근무지내 출장 여비 과다 지급 방지	
-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지급기준 또는 준용 규정 마련 *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여비지급 조항 신설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명시 등	(경기) 평택시 (충북) 옥천군, 진천군 (충남) 아산시, 청양군 (경남) 김해시 (강원) 영월군
- 근무지 내 출장 시 식비·교통비 지급 규정 삭제	(경기) 성남시, 광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진안군, 무주군 (전남) 여수시 (강원) 속초시
③ 운임비(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경북) 성주군 (강원) 속초시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표 5] 참고)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접대비 집행기준을 조례에 반영	(경기) 연천군 (전북) 남원시
② 업추비 사적사용 제한기준 구체적 열거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경기) 연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규정(환수, 징계 등) 조례에 반영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하남시, 연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④ 업무추진비 교육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보완	
-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교육 의무화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부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 사용내역 정기점검 의무화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기) 고양시, 하남시, 연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산청군
6.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표 6] 참고)	
①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경기)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가평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오산시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양양군
③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포상대상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을 조례에 반영	(전남) 영암군 (경남) 김해시 (경남) 하동군
- 공적 심사 제외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	(충남) 천안시 (경북) 성주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남해군, 거창군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포상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 참여 보장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⑤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선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7.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표 7] 참고)	
① '운영비 지원 지양' 등 문구 삭제 또는 운영비 지원금지를 조례에 명시	(경기) 남양주시, 안양시, 하남시, 군포시, 양평군, 연천군 (충남) 논산시 (전남) 목포시,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8.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표 8] 참고)	
①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양양군
9.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표 9] 참고)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① 국내여비 중 운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증빙서류 확인 후 실비 정산하도록 개선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해당 조문 삭제 또는 영 제8조의2 중 준용이 불필요한 조항만 준용하지 않도록 선별하여 정비	(경기) 안양시, 양평군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남) 밀양시
② 출장비 부정수령 금액의 2배, 5배 상당액이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규정 개선	(인천) 옹진군 (경기)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충북)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하동군 (강원) 태백시, 속초시, 삼천시, 영월군
③ 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거나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서산시, 청양군 (전북)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10.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표 10] 참고)	
①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 삭제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부합하도록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규칙에 반영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양양군
1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 ([표 11] 참고)	
①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인천) 옹진군 (경기) 안양시, 하남시, 연천군 (충북)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계룡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김제시, 임실군 (전남)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강원) 삼천시, 양양군
②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경북) 포항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
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 실효성 및 징계 양정의 적
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용 통일성을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적 명시(안 제8조의2)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신설(별표 1)

다.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2)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2) 3만원 → 5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65조, 제66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7. 28. ~ 2025. 8.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필요

-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부패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65조, 제6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징계대상 위반행위 명시(안 제8조의2)

제8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또는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신설(별표1)

징 계 기 준(제8조의2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 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3만원→[5만원](#))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의회의에서도 「거창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윤리 심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분명하지 않았음.

- 따라서 안 제8조의2(징계 등)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별표2와 같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질서를 확립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로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필요

-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조례 제4조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4조에서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고문의 연임제한 횟수를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인물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와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각과 정책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및 심사사항 확대(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 출국 45일 전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5조)
- 다. 계획서에 대한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안 제6조)
- 라.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다시 회의를 거쳐 재의결(안 제9조)
- 마.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출장의 적법·적정성
심의 및 출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13조)
- 바. 출장경비 이외 비용지출 관련 사항 규정(안 제14조)
- 사.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9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2025. 8. 14. ~ 2025. 8. 19.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필요

-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9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필요시

-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안 제11조)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243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외유성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함.

○ 본 전부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 제3조	•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	
제4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 2명 이하의 의원 + 민간위원 ⇒ 7명 이상 으로 구성 ※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 또는 공모 - 대면심사 원칙	
제5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 출국 45일 이전 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제6조	• 지역주민의견 수렴 - 의견 수렴 기간: 10일 이상	
제7조	•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제8조	• 심사기준 - 별표와 같이 정함	
제9조 제11조	• 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제12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 <u>의원 전원</u> 또는 <u>1명</u>으로 계획하는 경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u>선거가 있는 해</u> -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받은 경우 -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3조	•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 귀국 후 15일 이내: 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보고 ⇒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 ⇒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보고 -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	
제14조	• 예산 편성·집행 - <u>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 금지</u>	
제15조 ~ 제16조	• 사후관리, 징계현황의 공개	

-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의원비율을 지방의원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을 병행 하였으며, 제7항에서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사 원칙으로 규정함.
-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 게시, 주민의견 수렴기간 명시, 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등을 규정함.
- 조례안 제13조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기한과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함.
- 조례안 제14조에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자가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음.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내실있게 반영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행정안전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출장 내실화	-	1일 1기관 방문(회의참석) 및 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심사위 구성· 심사개선	2/3 이상 민간위원 구성 및 외부추천	(위원비율) 민간위원+지방의원(2명 이하) (구성방식) 공모·외부추천방식 병행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출장 사전검토 강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 3일 이내 누리집 게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심사위 의결서 첨부) 공개
	-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 정보 통합 심사
	-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
사후관리 강화	출장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및 60일 이내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심의결과 기재)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 회부
정보공개 확대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누리집 게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누리집, 내고장알리미 등 의무 게시 및 심사결과서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록
	-	징계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게시
비용지출 제한	-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 금지
	-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국외여행 표준약관 : 당일 취소시 50% 수준)
	-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금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거창
군의회 의원 윤리심사에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86조 제5항 삭제

- 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6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규칙 개정안은 거창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제척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86조의2 안을 신설함으로써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

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음.

- 이번 거창군의회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윤리 심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신설되는 제86조의2 조문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따라 무리 없이 규정되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2. 제안이유

○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던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7. 28. ~ 2025. 8.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폐지의 필요성: 필요

-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 규칙은 실효성이 없어짐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